금융위원회	**보 도 자 료** **7.23(목) 15:00부터 보도 가능**	• 미래창조 금융 • 따뜻한 금융 • 튼튼한 금융

작성부서	자본시장국 자산운용과, 자본시장국 투자금융팀			
책 임 자	안창국 과장(2156-9900) 권유이 팀장(2156-9790)	담 당 자	(사모펀드) 송병관 사무관(2156-9898) (크라우드펀딩) 김영대 사무관(2156-9798)	
배 포 일	2015. 7. 23(목)	배포부서	대변인실(2156-9543~48)	총 4매

제 목 : 자본시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 예고

① **(크라우드펀딩) 7년 이하 창업기업** 외에도 **프로젝트 사업은 업력에 관계 없이** 크라우드펀딩 이용이 가능하며, **투자한도 및 전매(1년) 제한이 없는 "전문투자자 등"**에 **벤처캐피탈, 전문엔젤투자자** 등 창업기업 등에 대한 이해가 높은 투자자를 포함

② **(사모펀드)** 적격 투자자의 사모펀드에 대한 **1인당 최소 투자금액을 1억원~3억원**으로 설정하고, 사모펀드 **운용사의 최소 자기자본은 20억원**으로 설정

1. 추진 배경

□ **크라우드펀딩제도 도입과 사모펀드 활성화** 등을 위한 자본시장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(7.6일)함에 따라 법률 시행을 위해 자본시장법 **시행령을 개정하고자 입법예고**를 진행

* 크라우드펀딩 제도는 공포 후 6개월('16.1월 예상), 사모펀드 관련 규제 개선 사항은 공포 후 3개월('15.10월 예상) 후 시행 예정

2.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

가 크라우드펀딩 제도 도입

(1) 크라우드펀딩을 이용하는 발행인의 범위

1 **7년 이하 창업·중소기업**

* 주권상장법인과 일부업종(금융·보험업, 골프장, 겜블링 등)은 창업지원법에 준하여 배제

2 중소기업이 **신기술개발, 문화사업 등 프로젝트 사업을 하는 경우**에는 **업력에 관계없이(7년 초과도) 이용**할 수 있게 함

* 비상장중소기업이, 기존사업과 회계를 분리하여 운영하는 경우

(2) 투자자별 투자 한도 구체화

□1 발행인이 투자위험성이 높은 창업·중소기업인점을 감안하여, 투자자의 전문성·위험감수능력 등에 따라 **투자한도를 차등화**

한도	동일기업당	연간 총 투자한도
일반투자자	200만원	500만원
소득요건 구비 투자자(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등)	1,000만원	2,000만원
전문투자자 등	없음	없음

□2 **투자 한도의 제한을 받지 않는 '전문투자자 등'의 범위***를 **확대**

* 자본시장법상 **전문투자자**(금융회사 등)에 더하여 전문성·위험감수능력을 **갖춘 사람을 추가로 선정**(벤처투자펀드, 신기술금융회사, 전문엔젤투자자 등)

(3) 투자자 전매 제한의 예외

□ **전문투자자나 발행인** 등 관련 정보를 충분히 취득한 자에게는 법상 제한된 1년 이내라도 **예외적으로 전매를 허용**

(4) 발행인의 발행 한도를 완화

□ 기업당 1년간 **7억원**까지만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모집 가능

* 현행 소액공모제도의 한도가 연간 10억원인 점 감안

○ 다만, 구체적 한도 산정시에 **전문투자자 등**이 **1년간 전매제한 조치**를 취한 가액은 제외하여 **조달가능한 금액을 확대**

(5)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(크라우드펀딩업)의 등록 요건

□ **자본금 요건 : 5억원**

* 법상 5억원 이상으로 위임 → 원활한 진입을 위하여 최소한으로 규정

○ **대주주 요건, 이해상충 방지체계** 등은 투자자문업자·투자일임업자 등록 요건과 유사하게 설정하고, **사업계획·설비요건**도 일부 완화하여 도입

* 사업계획 : **질적 판단이 개입될수 있는 항목 제외**(수지전망 타당성·실현가능성)
** 인적·물적설비 : **인력요건을 일부 완화**(주요 직무종사자 요건 배제)

나 사모펀드 활성화

(1) 사모펀드 적격 투자자 설정

□ 사모펀드 적격투자자를 **펀드의 투자위험도 및 환매 용이성** 등을 감안하여 차등 설정

구 분	현행 적격투자자
일반사모펀드	제한 없음
헤지펀드	· 전문투자자(일부 제외) · 5억원 이상 투자하는 개인·법인 등
PEF (기업재무안정 PEF)	· 전문투자자(일부 제외) · 10억원 이상 투자하는 개인 · 20억원 이상 투자하는 법인

⇨

구 분	개선 적격투자자
전문투자형 사모펀드	· 모든 전문투자자 · 레버리지 200%이하 : 1억원이상 투자자 · 레버리지 200%초과 : 3억원이상 투자자
경영참여형 사모펀드	· 모든 전문투자자 · 3억원이상 투자자 * GP임원·운용역은 1억원

(2) 전문사모집합투자업의 등록 요건

1 **자기자본 : 20억원**

* 현행 헤지펀드(60억원) 및 모든자산에 대한 전문투자자 대상 운용업(40억원) 보다 낮고, 전문투자자 대상 투자일임업(13.5억원)보다 높은 수준으로 설정

2 **전문인력 : 최소 3인** 이상

* 역량 있는 운용인력 진입 촉진을 위해 운용전문인력 진입 요건도 완화 추진(금투업 규정 개정 사항)

3 **대주주 요건, 물적 설비 요건, 이해상충방지체계** 등은 기존 **투자일임사 등록 요건**과 유사하게 설정

(3) 사모펀드 보고 규제 완화

1 사모펀드 **설립 보고 항목을 축소**하여 설립 부담을 경감

① **전문투자형** 사모펀드 : 총 16항목 → **총 7항목**(△9)

② **경영참여형** 사모펀드 : 총 11항목 → **총 9항목**(△2)

2 사모펀드 **정기보고 항목 및 보고 주기 완화**

①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정기 **보고 항목 : 4항목 → 2항목**

② 보고 주기 : **(현행) 분기 → (개선)** 자산 **100억원 이상 반기**
자산 **100억원 미만 연간**

(4) 경영참여형 사모펀드(PEF) 규제 완화

현 행	개 선
① 파생상품 헤지 방법* 제한 * 투자대상기업 주권 기초 파생	위험 헤지를 위한 목적이면 제한 없이 허용
② 투자대상기업 부동산·금전채권 투자 제한(구조조정)	구조조정 여부와 관계 없이 부동산·금전채권 투자 허용
③ 영업양수도 방식 투자 불허	허 용
④ SI투자자의 SPC 참여 제한	

(5) 사모펀드 관련 증권회사 투자 규제 완화

1 **전담중개업자 업무 범위 확대**

○ 전담중개서비스 **업무 범위**에 **전문투자형 사모펀드에 대한 초기 Seeding 투자**를 포함

2 증권회사 **기업금융부서에 대한 PEF LP투자 업무 허용**

○ 현재 정보교류차단장치로 인해 금지된 **기업금융부서의 PEF LP 투자** 업무를 허용

3. 향후 추진 일정

□ 입법예고* 후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법률 시행일에 맞추어 시행령 개정 완료

* 크라우드펀딩 관련 : 7.23일~9.1일 / 사모펀드 관련 : 7.23일~8.12일

※ 별첨 : <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주요 사항>

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☞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http://www.fsc.go.kr
넓게 듣겠습니다 바르게 알리겠습니다